

多國籍企業의 實態와 韓國進出에 따른 政策方向 改善에 關한 研究

立 鶴 淳

目	次
I. 序 論	
II. 多國籍企業의 資格基準과 投資動向	
1. 多國籍企業의 資格基準	
2. 多國籍企業의 投資動向	
3. 多國籍企業의 投資規模	
III. 多國籍企業의 優位性和 各國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1. 多國籍企業의 潛在的 優位性	
가. 生産面의 優位性	
나. 研究開發面의 優位性	
다. Marketing面의 優位性	
라. 信用과 經驗面의 優位性	
2. 多國籍企業이 各國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가. 先進國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나. 開發途上國의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IV. 多國籍企業이 韓國進出에 따른 制度上的 問題點과 政策方向의 改善方案	
1. 多國籍企業 誘致의 不可避性	
2. 投資保障制度和 優待措置	
가. 投資保障制度의 安全	
나. 企業活動을 爲한 優待措置	
3. 制度上的 問題點과 政策方向의 改善方案	
가. 現行制度上的 問題點	
나. 政策方向의 改善方案	
1) 業種選定에 關한 基準設定	
2) 出資比率에 關한 基準設定	
3) 雇傭의 基準設定과 勞動爭議에 關한 特例法의 改正	
4) 特惠措置에 關한 選別基準의 設定	
5) 國內企業의 經營合理化和 產業整備의 段階的 實現	
V. 結 論	

I. 序 論

오늘날의 世界는 戰爭과 平和 및 緊張과 和解, 그리고 競爭과 協力이라는 複合的인 要素들에 依해 國際關係를 形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모든 나라가 自國의 利益擁護를 爲해선 理念과 制度가 다른 如河한 나라와도 相互協助를 擴大시켜 그 속에서 더욱 더 큰 實利를 獲得하려는 傾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趨勢는 政治的 側面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같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特히 企業經營面에서 볼 때 더욱 더 두드러져 새로운 모습의 國際企業이 出現하여 國際經濟秩序의 轉機를 造成해 가고 있는 實情인데, 이러한 經濟的 側面에서의 國際化傾向은 經濟協力を 背景으로 하여 借款과 外國民間資本이 直接投資

의 形態로 盛行되고 있으며 그 投資의 最高形態로 볼 수 있는 多國籍企業이 國際化된 世界市場에서 橫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世界的 大勢의 하나인 多國籍企業은 經營資源의 格差를 바탕으로 開發途上國에 進出하여 本國에 있는 母會社의 經營方針에 따라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企業組織과 資本의 힘으로 世界的 生産과 그 流通을 더욱더 統合시킬 能力을 가진 巨大企業으로 變貌해 가고 있으며 多國籍企業을 誘致하는 受入國의 經濟에 對해서도 國內産業과의 競爭이나 技術格差의 擴大와 外國經濟에 對한 依存性의 深化等 여러가지 衝擊의인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資本과 技術의 貧弱, 外換不足 및 海外市場開拓의 不振等 諸般與件을 考慮할 때 우리가 目標하는 바 經濟成長과 發展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先進國의 多國籍企業과 關聯을 맺지 않으면 아니 될 立場에 있는 實情이다.

돌이켜 보면 “第1次 UN開發의 10年”의 期間인 지난 60年代의 우리나라 經濟는 두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完遂함으로써 當初의 計劃目標을 超過하는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高度成長은 計劃當局이 工業分野에 對한 높은 投資政策에 依해 誘導되었고 한편 점차 높아진 國內貯蓄率과 海外貯蓄導入의 德分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60年代의 高度成長과 工業發展을 根幹으로하여 自立經濟體制로의 巨大跳躍을 期待하게 될 70年代의 우리나라 經濟는 많은 未解決의 課題에 直面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對外的으로 國際通貨體制가 크게 변모되었고 主要國間의 國際收支不均衡의 持續 및 E E C를 中心으로 한 地域主義傾向의 強化와 新保護貿易主義의 대두 등으로 말미암아 輸出競爭이 날로 激甚해 가고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重化學工業 中心體制로의 工業構造 高度化에 따라 必然的으로 要請되는 生産規模의 擴大와 先進國과의 사이에 介在하는 技術水準 格差의 縮少 및 輸出産業의 積極的인 育成을 통한 劃期的 輸出增大와 輸入代替産業의 發展 擴大等 많은 問題들이 우리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基本的이고 또한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할 當面課題로는 巨大跳躍을 資金面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所要投資財源의 調達인 것이다.

그런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政府는 投資財源의 調達을 目的으로 民間貯蓄을 권장하는 한편 海外로부터의 資本導入形態를 從前的 借款主導型에서 元利金の 償還義務를 지지 않는 合作投資主導型으로 轉向함으로써 外國人의 投資誘致를 積極化할 수 있도록 投資環境의 改善에 努力하고 있다. 특히 80年代初의 100億弗輸出과 1人當 國民所得 1,000弗이라는 意慾的인 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外國人의 對韓投資를 本格化시켜 國際收支의 改善과 雇傭 및 技術의 向上에 큰 도움이 되도록 外資의 賢明한 善用을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런데 本論文은 우리나라의 開發投資에 所要되는 外資導入의 方法中 外國에 있는 작은 會社의 資本誘致 보다는 巨大한 民間資本인 多國籍企業의 誘致와 그 企業과의 合作投

資가 더욱 所望스러운 現時點에서 多國籍企業의 實態를 把握하고 對韓國進出에 따르는 制度的인 面과 政策的인 方向을 어떻게 改善해야 할 것인가를 試圖해 본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 實態把握의 部門으로서는 多國籍企業의 資格基準과 投資動向 및 規模를 檢討하고 따라서 多國籍企業이 지니고 있는 潛在的 優位성과 또한 多國籍企業이 先進國 및 開發途上國에 進出했을 때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해 보았다. 다음으로 多國籍企業의 韓國進出에 따른 制度上的 問題點과 政策方向의 改善方案으로서는 韓國經濟의 現實的 與件으로 보아 多國籍企業 誘致의 不可避性を 檢討해 보았고 또한 外國人投資에 대한 政府의 投資環境改善策으로서의 優待措置를 살펴 보았으며 따라서 다른 開發途上國家의 外資導入制度和 比較하여 우리나라의 現行制度上的 問題點을 分析함과 同時에 改善方案으로서 5個項目을 提示하려고 힘써 보았다.

II. 多國籍企業의 資格基準과 投資動向

1. 多國籍企業의 資格基準

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 or Multinational Enterprise) 이란 國際企業 或은 世界企業이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統一된 見解의 概念規定이 없으며 最近 企業 國際化의 傾向에 따라 약 10餘年 前부터 使用된 用語로서 美國의 巨大企業을 中心으로 하는 多國籍企業들은 國際經濟秩序의 轉機를 造成해 가고 있어서 우리의 關心을 모으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最近까지의 國際貿易의 理論이 主로 企業과 企業間의 分業에 바탕을 둔 國際的 分業과 交易増大를 爲하여 國際市場을 擴大하는 方案을 摸索하는데 力點을 두어 왔으나 特定の 經營者가 主導하는 企業組織 內部的 分業原理에 의한 國際分業 體制에 대하여는 等閑視되어 왔는데, 最近 高度로 發達한 巨大企業들은 國民經濟의 테두리를 벗어나 全世界의 生産要素의 可用성과 需要「패턴」에 立脚하여 企業經營의 戰略을 企劃하고 自己 企業의 組織으로 最適國際分業體制를 갖추는 소위 多國籍企業으로 변모해 가는 國際企業群의 事業活動이 이를 立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어떠한 企業을 多國籍企業이라고 하는지 그 基準을 理解함으로써 多國籍企業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大學의 Sidney E. Rolfe 教授에 依하면 國際的 投資 및 生産, 그리고 流通의 主體가 되는 一連의 企業으로서 販賣, 投資, 生産, 雇傭을 勘案해서 海外部門의 比重

註 1) Sidney E. Rolf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Perspective", the Atlantic Council, in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Praeger Special Studies, 1969), pp. 17~20

이 25% 이상의 企業을 國際企業이라한다⁽¹⁾는 定義를 내리고 있으며, 한편 같은 「하버드」大學의 Raymond Vernon 教授에 의하면 國際企業에 대한 여러가지 資料를 計量的으로 檢討해 본 끝에 美國系企業 約 200個 會社와 歐州系企業 約 30個 會社만이 多國籍企業으로 認定하고 있으며 또한 同教授의 研究에 의하면 이들 歐州의 多國籍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海外資產은 美國의 多國籍企業에 비해 約 5分の1程度라⁽²⁾ 하고 있다.

그리고 Richard Robinson 教授에 의하면 世界企業을 다음과 같이 國際企業, 多國籍企業, 汎國籍企業, 超國家企業 등 4種으로 分類하고 있다.⁽³⁾

첫째로 國際企業이란 國際的인 企業活動을 本國으로부터 輸出을 통해서 活動하고, 한편 企業의 最高方針을 外國에의 直接投資를 包含하는 海外市場 進出을 통하여 可能한 모든 戰略을 講求하려고 하는 企業이며, 둘째로 多國籍企業은 構造的으로나 企業의 最高意思決定에 있어서 海外企業活動은 國內企業活動과 同等視하며 企業目的 達成上 國境을 問題視 않고 投資効率面에 置重하여 會社의 投資財源을 配分하는 企業이다. 다만 企業의意思決定에 있어서는 國籍別 株式所有比率에 따라 이루어지나 本店의 經營에 대한 所有權이나 意思決定權은 本國人에 의해 支配된다. 셋째로 汎國籍企業은 國籍이 서로 다른 사람들(經營首腦部)이 모여 그 企業을 所有하고 經營하는 多國籍企業이며 따라서 企業의 意思決定은 國籍과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넷째로 超國家企業은 國際會議의 結果에 의하여 設立된 國際機構가 企業設立을 許可하고 登錄함과 同時에 또 그 機關에 稅金을 支拂하도록 許容함으로써 合法的으로 一國家에의 所屬을 排除한 超國家企業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企業은 超國家的 國際機構의 管理下에 屬하며 從來의 國家的 概念과는 獨立하여 存在하는 企業이다.

한편 IBM World Trade Corporation 會長인 Maisonrouge氏는 多國籍企業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첫째 多國籍企業은 相異한 經濟發展段階에 있는 多數의 國家에서 活動해야 하며, 둘째 多國籍企業은 한 國家안에서 研究開發 生産販賣 「서어비스」 등의 活動에서 어느 정도 종사하는 子會社를 海外에 갖고 있어야 하고, 셋째 海外에 있는 子會社에서는 그 所在國의 住民이 그 運營에 參加하고 있어야 하며, 넷째 多國籍企業은 또 여러 國家들로부터의 外國人을 包含해서 構成되는 外國人本部를 가져야 하고, 끝으로 多國籍企業의 株式은 國籍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所有되어야 한다.

以上과 같이 多國籍企業에 대한 概念이나 基準에 대해서는 各樣各色이어서 見解의 統一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要約하면 從來의 國家나 國民經濟라는 固定觀念의 범위를 벗어나 國境을 超越한 生産과 投資의 主役을 맡고 있는 世界企業化 時代의 進展에 편승하

註 2) Raymond Vernon,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National Sovereignty",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67, XLV, 2.

註 3) A survey of the various definitions is given by S.E. Rolfe in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background report for the 22n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stanbul, 1969, pp. 12~15

여 國際的인 生産과 流通의 主體가 되는 企業을 多國籍企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多國籍企業과 國際企業 或은 世界企業이라는 用語의 差異는 단순히 類似한 事象을 다른 말로서 表現한것에 不過하며, 다만 國家主權과의 상극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多國籍企業이라고 하면 經營主體의 意思決定, 人材의 登用, 研究開發成果의 均霑等의 면에서 受入國의 方針을 充分히 參酌하는 것이고, 國際企業 또는 世界企業이라고 할 때에는 이들 問題에 대한 參酌도가 얇고 企業經營에 대한 意思決定이 主로 純經濟的 動機에 따라 행하고 超國家性을 갖는 것이라고 區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多國籍企業이나 或은 國際企業이라는 名稱은 별도로 法律的인 規定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認定은 여러가지 基準을 檢討해야 하는데 어떠한 基準도 滿足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장 重要的 基準으로서는 “資本의 國際的分布”와 “多國의 經營”을 들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이를 採擇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基準으로 할 때에는 現在 “多國籍”이라고 하는 企業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⁴⁾

2. 多國籍企業의 投資動向

多國籍企業의 發祥地라고 할 수 있는 美國에서 一部 企業들이 그 規模가 巨大化함에 따라 經營首腦部에서는 高度한 管理組織으로 그 活動領域을 더욱 넓혀 갔는데 그들은 그 企業이 屬해있는 原籍國家가 아닌 世界市場을 前提로 國境에 구애됨이 없이 全世界의 生産要素의 可用性과 marketing戰略에 立脚하여 事業을 推進하는 多國籍企業의 出現으로 國際經濟秩序의 轉機를 造成해 가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같은 多國籍企業은 아직도 成長段階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趨勢가 앞으로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어떠한 狀態로 나타나게 될런지는 連斷하기 힘들지만 現段階에서 볼 수 있는 明白한 事實의 한가지는 意識的으로 國際化 乃至 世界化에 挑戰하고 있는 世界企業群의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進展되고 있으며 새로운 國際經濟를 設計하고 이를 實現하여 새 轉換點을 造成하려는 前衛的 或은 主導的인 役割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300~400個 程度의 多國籍企業이 國境을 초월한 企業帝國 (Corporation Empire)을 建設하여 世界經濟를 支配하리라는 豫測마저도 갖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多國籍企業의 存在理由는 國境을 超越하여 商品과 技術, 人的資源 및 資本의 調達과 marketing을 自己完了的으로, 그리고 가장 經濟的으로 遂行하는 이론과 自己企業 組織內의 最適國際分業體制를 確立하는데 있는 것이며, 이는 最近에 이르러 놀라운 發展을 보인 電子技術의 革新에 의한 經營技法의 開發과 國際通信 및 交通手段의 高度化로 世界가 좁아진데 많은 影響을 받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註 4) Rainer Hellmann, The Challenge to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1970; 由口統吾 譯, 多國籍企業의 抗爭, 1971, p. 27

그런데 오늘날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動向을 檢討해 보면 自社內의 國際分業 體制를 더욱 強化하여가는 새로운 戰略的 方向인 “第3의「봄」”⁽⁵⁾ 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過去에 있어서 國際企業의 投資傾向은 資源確保型이거나 現地市場 確保型인데 反하여, 最近 多國籍企業의 投資動向은 低賃金活用型으로 轉換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投資類型을 區分해 보면 첫째는 第2次大戰前에 先進國들이 國內需要의 工業原料를 獲得하기 위해, 植民地에 대한 石油, 鑛物 및 農水物의 採掘開發을 目的으로 한 天然資源 確保型이 있고, 둘째로는 先進諸國間에 市場確保를 目的으로 하는 現地市場 確保型이며, 셋째로는 多國籍企業이 確保한 第3國이나 本國市場에 販賣할 製品生産을 위한 低廉한 勞賃活用型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天然資源 確保型的 海外投資는 資源保有國으로부터 原料의 輸出은 收益이 적다는 理由로 加工이나 完製品을 만든 後에 輸出하도록 하는 政策과 諸般規定이 強化되고 있는 한편 原料에 대한 價格引上과 Nationalism의 壓力 때문에 投資企業은 다른 地域에서 새로운 資源開發을 模索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現地市場 確保型은 關稅障壁과 保護貿易政策이 契機가 되어 海外에 直接投資하는 形態로서 多國籍企業의 生成發展을 促進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保護貿易主義는 後進國이나 開發途上國家에서만 實施하는 것이 아니라 先進國에서도 斜陽化해가는 成人企業을 保護할 目的으로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國際資本은 이러한 關稅障壁의 回避手段으로 先進國 相互間의 市場確保를 爲해 進出하고 있다.⁽⁶⁾ 이에 反하여 開發途上國의 保護貿易政策은 輸入代替를 爲하여 世界市場의 趨勢와 遊離된 國產化政策을 推進하기 爲한 手段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市場은 規模의 經濟性을 可能케 할 만큼 크지 못했던 것인데 이러한 理由는 最近까지 多國籍企業이 後進國에 대한 製造部門의 直接投資를 소홀히 하는 傾向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셋째, 그러나 所得水準이 높은 先進國에서는 賃金壓力이 점차 加重되어 마침내 低賃金 勞動力活用型的 海外投資를 爲해 後進國이나 開發途上國에의 進出이 積極化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投資는 海外에 進出한 現地國家의 市場規模에도 制約을 받지 않고 世界的인 最適生産立地의 原則에 따라 多國籍企業 本來의 經營戰略을 展開할 수 있기 때문

註 5) 第3의 「봄」이라는 것은 美國이 海外投資에 있어서 低開發國에 生産施設을 投資하는 새로운 「봄」을 가르키는 것이다. 歷史的 觀點에서 살펴볼 때 第1의 「봄」期에 있어서의 投資는 主로 鑛山 石油 熱帶產果實等 海外의 天然資源確保에 努力을 기울였으며, 第2의 「봄」期의 投資는 2次大戰後인 特히 1950年代의 西歐市場確保를 爲해 企業進出이 活發하였다. 그런데 第3의 「봄」期이라는 것은 美國의 巨大企業들이 生産한 製品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後進國으로 輸出하는데 있어서는 外貨不足과 現地政府의 輸入規制等에 의해 輸出減少의 經驗을 갖게 되어 現地生産에 의한 販賣增大와, 第3國이나 自國市場에 販賣할 生産品을 低廉한 勞動力을 活用하기 爲한 方案으로서 새로운 投資의 「봄」을 이끈 것이다.

註 6) Rainer Hellmann, The Challenge to U. 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1970, Chapter IV

에 海外投資에 있어서 第3의 「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⁷⁾ 그런데 開發途上國家에서 勞動集約的인 製品을 國內市場이 협소하여 大量生産 方式의 自國化가 困難한 경우에 多國籍 企業의 進出에 의하여 開發하게 되면 低賃金活用이나 輸出增大面에서 投資企業側이나 多國籍 企業의 受入國 모두가 有利할 수 있는 것이다.

多國籍 企業의 海外投資는 主로 電氣, 纖維, 食品加工의 分野等 大部分 勞動集約도가 높은 業種들인데 이와같은 投資가 크게 刺戟을 받은 것은 美國의 關稅法에 規定된 附加價 值關稅制度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開發途上國이나 低開發國에 對한 새로운 投資의 「봄」을 이르는 또 하나의 理由는 지난 15餘年間に 걸쳐 低開發國으로 부터 美國에 輸入된 勞動集約製品이 急増함에 따라 促進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⁹⁾ 그런데 앞서 說明한 첫째와 둘째인 資源提供國이나 市場供給國은 多國籍 企業이 自國에 進出함에 있어서 主導權을 掌握하고 強勢의 立場에 서는데 反해 生産基地型의 投資는 多國籍 企業側이 優位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多國籍 企業은 世界市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多國籍 企業의 生産基地 誘致에 積極的인 것은 受入國인 開發途上國이며 이들 開發途上國은 生産基地의 誘致를 통해 輸出增大에 의한 國際收支 效果와 自國內의 聯關工業의 開發 및 國民 一般의 技術習得과 雇傭增大를 피하는 點에서 有利하기 때문이다.

3. 多國籍 企業의 投資規模

지난 10餘年間に 걸쳐서 自由世界의 經濟動向中 우리의 注目을 끌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國際投資의 急速한 增大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第2次世界大戰 以前인 1920年代에 있어서도 國際投資는 活發했었는데 이 時期에 있어서는 그 投資動向이 다분히 資産運用投資 (Portfolio Investment)의 形態로서 國際間的 資金流通은 低金利 地域으로 부터 高金利 地域으로 移動하는 程度였다. 그러나 第2次大戰 以後부터는 一國의 巨大企業이 海外에 支店을 設置하거나 또는 海外企業을 買收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外國에 生産基地의 設置等 直接投資 (Direct Investment)의 形態를 취하고 있는 것이 國際間的 資金移動過程에서 重要な 構成部分을 占하고 있는 實情이다.¹⁰⁾ 그런데 第2次世界大戰

註 7) N. H. Leff, *Investment in the LDCs: The Next Wave*, C. J. W. B., Vol. 4, No. 6, 1969.

註 8) 이 關稅는 輸入商品에 대한 關稅附加에 있어서 그 課稅標準額을 附加價値에 두는 美國의 關稅制度인데 一般의으로는 加工貿易에서 適用되고 있다. 예를 들면 美國이 韓國으로 부터 美國이 輸出한 原料 또는 半製品으로 만든 完成品을 輸入할 境遇에는 그 價格에서 美國이 輸出한 原料나 半製品의 價格만큼을 控除한 殘額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制度이다.

註 9) Hal B. Lary, "Trade of the LDCs: Manufactures Point the Way,"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1966 & Hal B. Lary, *Import of Manufacture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註 10) Charles P. Kindleberger,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1970,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hapter I

以後에 있어서 外國에 대한 直接投資의 大部分은 美國의 巨大企業인 多國籍企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世界全體의 對外投資에 對한 規模는 約 900億「달러」에 達하는데 이 중에서 美國의 對外投資는 約 600億「달러」程度를 占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美國內에 直接投資한 規模는 約 100億「달러」程度로 推定되고 있다.⁽¹¹⁾

한편 美國은 第2次大戰後 歐州地域과 「카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에 集中投資를 한 바 있는데 그 規模는 모두 600億「달러」程度에 이르며 지난 1968年末 現在 이 地域에 대한 美國의 民間投資殘額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0餘億「달러」를 保有하고 있어서 美國이 歐州에 대한 挑戰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1966年以後 歐州系 多國籍企業이 美國에 對한 直接投資의 增加率은 美國系 多國籍企業의 歐州地域에 대한 直接投資의 增加率 보다 빠른 「템포」를 보이고 있으며, 1968年末 現在 長期民間 資本의 殘高는 歐州側에서 260億「달러」나 保有함에 이르러 美國과 歐州間에는 점차 均衡을 되찾기에 接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美國과 歐州의 投資狀態 (各 年度末 現在)

[表 1] 單位: 100萬弗

區分	年度	1957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I 美國의 在歐州資産		16,902	24,825	27,875	29,688	32,039	35,550	39,658
1. 民間投資		6,935	17,000	19,602	21,258	23,342	25,410	28,124
2. 政府의 非流動借款 및 請求權		9,967	7,825	8,273	8,430	8,697	10,140	11,534
II 歐州의 在美國資産 및 投資		17,717	29,856	33,367	33,953	35,170	41,040	47,936
1. 長期資産 및 投資		9,451	16,237	17,726	18,304	17,853	20,248	26,037
2. 長期資産 및 美國政府의 資産		8,266	13,619	15,641	15,649	17,317	20,792	21,899

資料: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65~1969年 各 9月號 (美國商務省) 에 依據 作成
 ※ 1968年度分은 暫定數字임

그리고 自由陣營에 있는 民間投資인 多國籍企業의 對外 直接投資規模에 대해서 OECD가 推計한 바에 의하면 1966年末 現在의 世界總額은 約 896億「달러」에 達하며 이 중에서 545億「달러」가 (約60%) 美國投資이고, 「카나다」는 32億「달러」(約4%) 이며, 日本이 10億「달러」(約1%)에 비해 歐州側은 約 300億「달러」程度로서 全體의 35%에 該當하는데 이 歐州諸國의 對外投資는 그 절반 이상이 다른 歐州諸國에 있는 生産施設이나 資本參加에 投資되고 있다.⁽¹²⁾

註 11) S. E. Rolf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background report for the XII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stanbul May 31~June 7, 1969)

註 12) Rainer Hellmann, The Challenge to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1970, Chapter I

그런데 美國의 對外 直接投資規模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年末 現在로 歐州地域에만 集中되어 있으리라는 豫想을 뒤엎고 「카나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順으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投資總額은 1950年度の 117餘億「달러」에 비해 18年後인 1968年度에는 무려 6배에 達하는 規模인 647餘億「달러」로 推定되고 있다.

美國의 對外直接投資狀況 (各 年度末 現在)

[表 2]

單位：100萬弗

區分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E E C 地 域		3,104	3,722	4,490	5,426	6,304	7,584	8,444	8,992
EEC以外 西 歐 洲		3,638	5,208	5,850	7,283	7,681	8,619	9,482	10,394
카 나 다		11,602	12,133	13,044	13,796	15,223	16,999	18,097	19,488
라틴 아메리카		8,236	8,424	8,662	8,894	9,391	9,826	10,265	11,010
아프리카		1,064	1,271	1,426	1,685	1,918	2,074	2,273	2,673
아 시 아		2,477	2,500	2,793	3,112	3,569	3,896	4,289	4,693
其 他 地 域		3,546	3,968	4,422	4,790	5,242	5,707	6,636	7,506
總 計		34,667	37,226	40,686	44,386	49,328	54,711	59,486	64,756

資料：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61~64年 8月, 65~67年 9月, 68~69年 10月號,
(美國商務省)에 依據作成
※ 1968年度分은 暫定數字임

한편 外國의 多國籍企業들이 美國市場에 直接投資한 狀況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歐州諸國, 「카나다」, 日本, 「라틴 아메리카」 順位로 되고 있으며 그 投資總額은 1961年度の 73餘億「달러」에 비해 7年後인 1968年末 現在 約 46%가 增加한 108億「달러」로 推定 되고 있다.

美國內外 國企業의 直接投資狀況 (各 年度末 現在)

[表 3]

單位：100萬弗

區分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E E C 諸 國		1,558	1,675	1,728	1,840	1,975	2,144	2,405	2,790
EEC 以外의 歐 洲 諸國		3,660	3,570	3,763	2,980	4,101	4,129	4,599	4,960
카 나 다		1,989	2,064	2,183	2,284	2,388	2,439	2,575	2,659
日 本		92	112	104	72	118	103	108	181
라틴 아메리카		a	a	a	a	161	177	176	164
其 他 國		182	190	165	187	53	61	59	61
總 計		7,392	7,612	7,944	8,363	8,797	9,053	9,923	10,815

資料：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65~67年 9月號, 1968~69年 10月號
(美國商務省)에 依據作成
※ a는 其他國에 包含되어 있음

Ⅲ. 多國籍企業의 優位性과 各國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

1. 多國籍企業의 潛在的 優位性

가. 生産面의 優位性

오늘날 世界經濟의 成長에 일익을 擔當하고 있는 多國籍企業은 開發途上國家의 國內企業(民族企業)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優位性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生産面의 優位性이다.

특히 多國籍企業은 比較的 標準화된 製品을 生産하는 産業 —— 大體적으로 Engineering 業界인데 化學이나 合纖에서도 이러한 例를 볼 수 있다 —— 에 있어서는 全世界의인 基準에서 事業活動을 遂行하며 一工場 一製品方式(Product by Plant)을 통해서 規模의 經濟性을 達成토록 促進하고 있다. 이와같은 規模의 經濟性을 達成하려는 努力은 美國系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의 事業活動에서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런데 生産活動面에서 본 多國籍企業의 優位性을 一印象的인 見解로 소개한 바가 있는데 ICC美國國內委員會의 Judd Polk氏의 計量的 測定에 依하면 海外直接投資 1「달러」(帳簿價格)에 따른 海外生産額은 每年 約 2「달러」에 達하고 있으며 美國系多國籍企業이 海外에 分布되고 있는 子會社의 生産額은 1966年度의 경우 1,200億「달러」로 推定되므로 이는 大體적으로 西獨 및 英國의 同年 GNP(1966년의 西獨 GNP는 1,190億「달러」, 英國의 GNP는 1,050億「달러」임)에 匹敵하는 數值¹³⁾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多國籍企業이 世界經濟의 生産活動에서 차지하는 全體의 比重이 어느 程度인가를 觀察해 볼 때 國際商工會議所의 推定에 依하면 資本輸出順位の 第1位로부터 第10位까지의 10個國이 直接投資에 의한 自國以外에서 이룩한 生産額은 1967년의 境遇 2,400億「달러」를 超過했으며, 同年에 이 10個國이 합친 商品 輸出額은 겨우 1,300億「달러」程度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와같은 事實은 巨大한 多國籍企業이 海外活動으로서 이루어진 直接投資는 商品 輸出의 約 2배에 達하는 相對的 地位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버만」氏의 推定에 依하면 1969年度에 있어서 自由世界의 GNP가 2兆「달러」인데 이중에서 多國籍企業에 의한 海外生産은 3,000億「달러」에 達하고 있으며 이는 多國籍企業에 對한 生産面의 優位性을 端的으로 表現해 주고 있는 것이다.

註1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Growth and Spread of Multinational Companies, QER Special No. 5, October 1969 & Judd Polk, The New World Economy,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Jan.-Feb., 1968)

나. 研究開發面의 優位性

多國籍企業이 그 競爭相對인 一國企業 或은 國內企業에 비해 生産面의 優位性을 누릴 수 있는 背後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巨額의 研究開發費를 負擔할 수 있고 또 그 研究費는 結果적으로 國內外에서 實現하는 大規模의 賣上高에 配分할 수 있는 潜在的인 優位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現代企業의 經營戰略에는 特定の 技術을 支配하거나 또한 研究活動의 밑받침 없이는 所期의 成果를 達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 하나의 事例를 檢討해 보면 IBM은 「시스템 360·시리즈」의 電算機 開發에 約 50億 「달러」의 研究費를 投資해야 했던 事實이라 던지, 또는 美國企業이 通信衛星을 生産하는데 있어서는 5年間에 걸쳐 每年 500萬~2,000萬 「달러」의 研究費 投資가 必要했던 事實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研究努力의 維持를 爲해서는 年間 數拾億 「달러」 程度의 賣上高를 確保해야 하는 바 國際市場 乃至 世界市場을 支配하지 못하는 國內企業 或은 一國企業으로서 는 先사 巨額의 研究費를 投資한다 하더라도 그 研究結果의 成果를 充分히 活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963年度의 境遇 美國系 多國籍企業이 投資한 研究費는 海外에 所在한 子會社의 年間賣上高에 겨우 1.1% 程度이고 美國內에서의 賣上高에 比較할때는 2.9% 程度나 된다고 하는데⁽¹⁴⁾ 이와 같은 巨大한 賣上을 올릴 開發途上國의 國內企業 (或은 一國企業) 도 없을 뿐만 아니라 賣上에 앞선 生産能力도 貧弱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텐포드」 研究所가 歐州地域에 投資한 美國系 多國籍企業 200個 會社를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그 半數程度의 會社가 歐州에 있는 子會社에서 研究活動을 하고 있음이 確認되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大部分의 會社가 總研究費에서 4% 以下를 歐州에 있는 子會社에 配當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¹⁵⁾ 이는 오늘날 多國籍企業이 原籍 國內에서 얼마나 많은 研究費를 投資하고 있는가를 立證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 marketing面의 優位性

多國籍企業은 또한 marketing面에 있어서도 開發途上國家의 國內企業에 비해 越等한 優位性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研究結果에 의한 새로운 製品을 急速히 改良을 한다든지 또는 海外에 「프란트」 進出이 重要한 多數의 産業 (主로 消費財産業) 에 있어서는 適當한 利潤率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企業의 賣上高가 크면 클 수록 利潤도 높을 것이며 따라서 그

註 14) Rainer Hellmann, The Challenge to U. 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1970, Chapter VI

註 15) John H. Dunning,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Europe (Reading: December, 1967), p. 16

만큼 企業이 新製品이나 或은 「프란트」 進出에 따르는 危險을 負擔할 能力이 커지기 때문에 計劃的인 marketing 活動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比해 開發途上國의 國內企業은 最後에 가서 크게 「히트」 하는 製品을 開發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때까지 失敗를 거듭할 境遇 그에 따른 危險負擔을 감당할 餘裕를 多國籍企業처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普通인 것이다.

그리고 多國籍企業은 國際市場活動에 있어서 技術革新과 國際的展示效果를 통해 新製品은 市場法則에 따라 “trickle down,”⁽¹⁶⁾의 過程을 밟는 것이다. 換言하면 新製品은 小數의 高所得層에 의해 購買되고 이것이 展示效果를 通하여 波及되는데 이러한 過程에서 高所得層은 富者로서의 체면과 差別的 消費를 追求하는 消費競爭에서 選擇에 接近할 수 있는 餘裕를 갖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原理는 國際市場에도 適用되어 新製品은 第1段階에서 歐美에 紹介되고 점차 다른나라로 波及되는데 多國籍企業은 이와같은 trickle down의 marketing方法을 國際市場에 보다 迅速하고 安易하게 促進시키며, 多國籍企業이 海外投資를 하는 動機의 하나도 그들의 新製品 marketing을 促進시키기 爲한 市場機構의 統制權을 장악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라. 信用과 經驗面的 優位性

多國籍企業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潛在的 優位性은 信用面과 經驗面的 優位性인 것이다. 多國籍企業은 그 規模의 크기와 事業活動의 廣域化에 關連해서 金融面에 있어서도 높은 信用을 獲得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經營管理方法이 특출한 多國的企業은 資金이 比較的 豐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資本이 必要할 경우에 있어서도 株式市場이나 또는 金融機關을 通해서도 그 企業들이 쌓아올린 信用을 基盤으로 해서 쉽사리 調達될 뿐만 아니라 그 資金의 一部를 資金이 不足해서 資金「코스트」가 높은 他國에 所在한 子會社의 事業活動을 爲해 손쉽게 送金되는 事例가 많은 것이다.

한편 多國籍企業이 確保되고 있는 最大의 利點은 一般的이라고 할 수 있는 直接的인 特定の 機能을 發揮하는 結果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世界의 事業場에서 獲得된 尙大한 經驗과 技術의 蓄積을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버드」大學의 Sidney E. Rolfe 教授가 適當한 表現으로 指摘하였듯이 多國籍企業이 잘 提供하지 않으려는 要素는 資本이 아니고 事業經營에서 얻어진 經驗과 그 技術이란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고⁽¹⁷⁾ 한것만 보아도 이 經驗과 技術이 얼마나 重要的한 것이며 開發途上國의 國內企業

註 16) trickle down이란 一名 2段階 marketing이라고도 하는데 研究結果로 開發된 새로운 製品이 生産國(또는 特定地域)으로 부터 다른나라(或은 他地域)로 marketing 活動을 遂行해 가는 一連의 過程을 말한다. 例를들면 新製品이 生産되면 opinion leader格인 上流層에서 購買되고 이들의 展示效果에 依해서 中産層과 低所得層에 까지 波及시키게 하는 것이다.

註 17) Sidney E. Rolf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22n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stanbul, 1969

으로서는 따라가기가 힘든 것임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複雜한 世界市場의 事業場에서 또는 高度의 技術水準이 다른 事業活動에서는 얻어지는 經驗도 豊富할 것이며 그 얻어진 經驗은 尙大한 事業場으로 곧 普及시켜 높은 生産性を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尙大한 經驗과 技術의 蓄積은 美國과 같이 經濟적으로 發展한 나라에 있어서는 獨自의인 事業活動을 展開하는데 最適의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多國籍企業의 習熟曲線(一名 學習曲線; learning curve)은 他企業의 그것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그리고 成功은 成功을 낳는 傾向을 보이는데 이와같이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家에서의 事業經驗을 蓄積할 것 같으면 國際事業場에 새로운 參與를 爲해 出發한 企業에 比해서 一般的으로 開發途上國家에서의 事業活動을 展開함에 있어서는 越等한 優位性を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 多國籍企業이 各國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가. 先進國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오늘날의 多國籍企業은 原籍國家의 經營首腦部에서 中央集權적으로 計劃되는 世界生産의 支配體制를 強化하고 反面에 分散的 市場機能이 支配하는 自由로운 國際交易 體制를 弱화시키는 傾向이 있으며 따라서 그 大規模성은 世界的 生産성과 經濟성을 向上시켜 經濟的 側面에서는 多様な 寄與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反面에 政治적으로는 多國籍企業과 個別的인 政府사이에 不均衡을 造成하였으며 이 不均衡은 어느 한도까지 참을 수 있으나 이 한도를 넘어서면 어떤 世界的인 統制機構에 의해 均衡을 바로 잡을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래서 多國籍企業은 先進國에서도 심각한 問題를 提起시키고 있다.

그 가장 큰 問題는 經濟를 統制하는 政府의 機能과 能力을 弱화 시킨다는 點이다. 즉 多國籍企業은 그 規模의 巨大성이나 國際的 組織網 때문에 한나라에 適用되는 法規를 回避할 수 있는 신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國民經濟의 重要部門이 外國人の 企業에 의해 支配될 때 金融政策, 反獨占政策, 賃金 및 所得政策은 變하고 마는데 이와같은 事實은 「카나다」 같은 國家에서는 이미 오래 前부터 是認되어 온 問題이다.

오늘날 美國에 있어서도 多國籍企業의 國際的活動 때문에 國家 經濟施策 樹立의 自律性이 위축될 程度이다. 最近 美國內에서는 새로운 形態의 保護貿易運動이 일어나고 있는데 第2次大戰後 最大의 自由貿易主義의 危險期였던 70年の 保護貿易運動은 纖維交涉 걸렬을 原因으로 하여 日本을 그 目標로 한 것인데 반해 이번의 保護貿易運動은 어느 外國을 目標로 한 것이 아니라 美國系 多國籍企業을 相對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더우기 이 運動의

註 18) E. I. U, The Growth and Spread of Multinational Companies; 小沿敏 譯, 多國籍企業と 世界經濟 1971, p. 35

註 19) Raymond Vernon,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Power versus Sovereignty (Foreign Affairs New York, July, 1971)

中核은 美國 最大의 勞動團體인 AFL·CIO인 것이다.

이들은 “多國籍企業은 職場을 海外에 輸出하고 있는 元兇”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71年 여름이래 AFL·CIO는 多國籍企業의 海外進出 規制를 試圖하고 있으며 또한 美國議會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議員이 점차 많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즈」法案(70年通商法案)을 필선 상회하는 保護貿易法案인 「허드게·버그」法案이 審議의 機會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同法案은 美國系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와 技術輸出을 規制하고 主要 外國製品 輸入을 65~69年의 平均割當制度下에 둔다는 엄한 內容이다.

그리고 AFL·CIO 會長인 「조지·미니」氏는 “多國籍企業이 職場을 輸出하고 輸入品이 美國안의 職場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의 惡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失業問題는 解決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共感은 意外로 커져서 世論의 一部로 定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美國貿易緊急委員會의 「트랄트·켄틀」委員長은 美國系 多國籍企業 74個 會社의 事業資料를 分析한 “美國을 비롯한 世界經濟에 미치는 多國籍企業의 役割”이라는 報告書를 發表하고 AFL·CIO의 多國籍企業 비난에 대해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 歸趣가 注目되고 있다.

한편 多國籍企業이 歐州地域의 產業界에 미친 影響을 檢討해 보면 한마디로 企業合併의 「붐」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고 보는데 第2次 大戰以後부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國際的인 民間 直接投資의 흐름에 있어서 特徵的인 事實의 하나는 後進國이나 開發途上國에 대한 直接投資 보다도 先進國 相互間의 投資가 큰 比重을 차지하여 왔었다는 點이다. 이러한 事實은 投資券團氣의 條件等에 左右되는 事情보다도 投資機會인 製品의 市場性, 原料調達源, 또는 投資收益性等的 條件에 더욱 크게 左右되어 왔기 때문에 美國系 多國籍企業은 지난 60年代 下半期까지 歐州一帶를 黃金의 投資地域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美國系 多國籍企業의 대거 歐州進出은 「유럽」에 있는 國內企業의 自體防衛手段과 規模擴大 및 合理化政策으로 合併의 「붐」을 가져온 것이다. 그 實例로는 英國에 있어서도 顯著하였고 歐州大陸에도 일어났으며 最近에는 日本서도 合併의 「붐」을 이르킨 바 있다. 英國에 있어서는 5年餘에 걸친 合併 및 産業合理化를 推進한 結果 1969년에 이르러서는 自動車 및 電氣部門에 있어서는 單一企業이 國內市場을 支配하는 體制가 이루어졌고, 佛蘭西에 있어서는 化學會社가 合併했으며 이러한 趨勢는 西獨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들 大部分은 政府의 合併壓力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은 合併의 背後에는 美國系 多國籍企業의 歐州進出에 따라 向後 15~20年後의 第3의 世界産業勢力으로서 登場하는 것은 歐州地域이 아니라 歐州地域에 進出한 美國系 多國籍企業群이라는 一部 指導層에 있는 人士의 豫測에도 影響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하버드」大學의 Sidney E. Rolfe 教授는 “20年後에는 主로 美國系의 多國籍企業 100餘個 會社가

世界市場을 支配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歐州側의 不安에 同調해서 美國系 多國籍企業은 國際的인 未來圖中에서 相對보다 크고 높은 地位에 설 것이라고 記述한⁽²⁰⁾바를 分析해 보면 多國籍企業이 先進國에 미치는 影響은 未來社會에 더욱 더 클 것으로 豫想된다.

나. 開發途上國의 產業界에 미치는 影響

오늘날 國際經濟社會에서 低開發國은 非能率의 본보기인데 反하여 多國籍企業은 能率極大化의 標本으로서 自社組織內의 最適國際分業體制를 通하여 生産要素價格의 國際的 平準化와 資源配分上의 效率性を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多國籍企業이 世界의 資源을 特히 開發途上國의 資源을 生産의 目的을 爲해 얼마나 效率的으로 配分하느냐 하는 問題는 多國籍企業을 받아 들이는 開發途上國 政府의 決定能力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또한 一般的으로 國民經濟의 長期的인 戰略面에서 본 影響은 그 나라에 進出한 多國籍企業의 投資의 量과 形態에 따라 多様할 뿐만 아니라⁽²¹⁾ 開發途上國家의 產業界에 미치는 多國籍企業의 影響은 不利한 側面과 有利한 側面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不利한 側面은 ① 産業構造의 不均衡 招來, ② 經濟의 隸屬可能性, ③ 對外債務의 永續化, ④ 原資材 海外依存性의 深化等を 代表的으로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産業構造의 不均衡 招來는 多國籍企業이 一般的으로 開發途上國에 進出할 때에는 成長産業과 勞動集約的 産業에 偏重하기 쉬우므로 輕工業偏重의 産業構造를 深化시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實現하지 못하고 오히려 不均衡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② 經濟의 隸屬可能性은 國內企業에 비해 經營資源의 格差가 높은 多國籍企業이 過多하게 投資될 경우에는 國民經濟가 外國資本의 利潤追求를 爲한 商品生産 및 그 市場과 勞動市場으로 轉落하고, 主權政府가 國民福祉向上을 위한 政策追求에 影響을 미치므로 自國經濟가 外國資本에 隸屬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③ 對外債務의 永續化는 外國 民間資本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이는 國家는 大部分 外換事情이 어려운 實情이므로 外國投資家가 元金を 回收하지 않는 한 그 事業活動에서 얻어진 利潤은 繼續해서 送金を 해야 하는바 오히려 長期的인 眼目에서 본다면 對外債務를 永續化시키는 結果를 招來케 된다.

④ 原資材의 海外依存性 深化는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에 投資하는 動機가 販賣市場 確保를 目的으로 할 때에는 所要資材의 重要部分을 原籍國家의 母會社나 他國에 있는 子會社로부터 導入하여 加工 乃至 組立하는 生産過程을 밝게되므로 現地國家는 原資材의

註 20) Sidney E. Rolf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22n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stanbul, 1969, p. 24

註 21) E. I. U, The Growth and Spread of Multinational Companies. 小沿敏 譯, 多國籍企業と 世界經濟, 1971, pp. 134~135

海外依存性を 深化하게 된다.

둘째로 有利한 側面은 ① 輸出增大 ② 雇傭效果 ③ 技術向上 ④ 資本不足의 克服 ⑤ 聯關産業의 開發等を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輸出增大는 輸入代替와 國際收支改善의 效果를 수반하는데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에 對한 最近의 投資動機에는 低賃金活用型이 있어 그 生産品을 母會社가 있는 原籍國이나 第3國으로 輸出할 때 現地國家로서는 國際收支改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國內企業이 生産한 製品도 輸出市場에서 外國企業과의 「파트너」를 이룩하여 marketing活動을 順調롭게 할 수 있고 또한 現地國家의 國內消費를 爲할 때는 輸入代替의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② 雇傭效果는 周知하는 바와같이 多國籍企業은 開發途上國의 값싼 勞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만큼 現地國家의 雇傭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③ 技術向上은 多國籍企業이 높은 水準의 技術을 가지고 進出하기 때문에 國內의 技術陣은 外國의 先進技術을 外國까지 안가더라도 손쉽게 習得할 수 있는 것이다.

④ 資本不足의 克服은 大部分의 開發途上國에서는 資本의 本源의 蓄積過程을 거치지 않고 意慾的인 開發을 推進하기 때문에 항상 資本不足에 허덕이게 마련이며 그러한 結果는 無限한 投資需要에도 불구하고 많은 分野가 황무지로 방치되기 쉬운데 이럴때 外國資本은 國內資本의 不足을 「카버」해줄 뿐만 아니라 最近과 같이 借款獲得이 如意치 않을때에는 元利金償還의 義務를 지지 않은 外國民間企業의 直接投資는 現地國家에 더욱 所望스러운 것이다.

⑤ 聯關産業의 開發은 多國籍企業의 投資에 의해 成長産業으로 그 企業이 發展하게 되면 그 業體를 둘러싼 前後方의 聯關産業들이 開發되게 마련이며 이에따라 GNP의 附加價値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多國籍企業의 開發途上國 進出에 따른 現地國家의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은 主權政府의 政策能力에 따라 有利한 側面에 대한 效果의 積은 不利한 側面의 部門에 대한 總計를 「카버」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많은 것이다.

IV. 多國籍企業이 韓國進出에 따른 制度上의 問題點과 政策方向의 改善方案

1. 多國籍企業誘致의 不可避性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70年代의 韓國經濟는 여러 部門에서 많은 課題에 直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特히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輸出競爭이 날로 激甚해 가고 있으며 對內的으로 輸出 基盤의 再整備과 重化學工業 中心體制로의 工業構造高度化 및 이에 따른 生産規模의 擴大,

技術의 向上, 投資財源의 確保等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政府는 經濟開發計劃에 所要되는 投資財源의 調達을 目的으로 國民貯蓄을 增大토록 努力하는 한편 海外로부터 從來의 借款主導型에서 元利金償還義務를 지지 않은 合作投資主導型으로 轉向함으로써 外國人의 投資意慾을 고취하는 同時에 友邦諸國과의 資本紐帶를 擴大함으로써 國家安保에도 寄與토록 多角的인 效果를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施策의 轉換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不可避한 要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經濟的 側面에서 外國民間企業의 直接投資에 대한 必要性이 날로 커가고 있는 要因으로서는 한마디로 要約하여 公共「베이스」든 或은 商業「베이스」든 이제 借款은 限界點에 도달하고 있는 實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實情으로서의 元利金の 償還이라는 壓迫 때문에 短期의 借款은 꾸어다 쓸 형편도 못되고, 또한 長期의 것은 求得하기가 매우 힘든 實情인데다가 開發投資에 所要되는 外資는 해마다 늘어가기만 하는데 現在의 輸出로는 이를 補填할 형편도 못되어 外國의 民間企業을 積極的으로 誘致하여야 한다고 해서 政府는 外國人 直接投資의 環境改善을 爲해 몇가지 主要한 優待措置를 취하고 있음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서 外國民間企業의 對韓投資를 刺戟하기 爲하여 主要先進國에 投資誘致官을 派遣하여 準常駐態勢를 갖추고 있는데 이와같은 常駐誘致官의 派遣은 지난 10年間に 걸친 外國民間企業의 對韓投資가 主로 美·日 兩國에 偏重되어 있는 것을 歐州全域을 對象으로 하여 널리 擴散시키자는데 主眼點이 있는 것이다.

한편 外國民間企業에 의한 直接投資를 積極的으로 誘致해야 할 必要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友邦諸國과 資本紐帶를 통한 國家安保에도 寄與토록 하는 政治的인 側面에서도 切實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事例는 美國의 巨大한 多國籍企業이며 自動車「메이커」인 GM社의 對韓進출을 가리켜 金鍾泌國務總理는 이를 美軍 1個師團의 常駐와 맞먹는다고 論評한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計量的인 妥當性의 如否는 둘째 問題로 치더라도 政治的인 側面에서 본 外國人 投資誘政의 切實性은 한마디로 이 金總理의 論評속에 要約될 수도 있는 것이다. 國際情勢가 激變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에 誘致된 自由世界의 資本은 곧 韓國의 安全保障에 無視할 수 없는 堡壘로서의 役을 擔當할 것이다.

한편 62年 外國民間人에 의한 對韓投資가 처음으로 始作된 以來 72年 11月末까지의 投資狀況을 살펴보면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0年代에는 별로 活發하지 못한 實情이었으나 70年度에 들어서면서 점차 增加現象을 보였고 72年度에 이르러서는 1億달러를 超過함으로써 投資總額은 3億5千9百萬「달러」에 이르러 매우 活氣를 띄고 있으며, 國家別 投資狀況은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과 日本에 편중되어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投資業種은 雜貨類에서 精密機械에 이르기까지 千態萬象이며 1件當 投資規模는 平均 70萬「달러」程度인 小規模로서 앞으로는 外國의 작은會社에 대한 資本誘致 보다는 巨大한 多國籍企業과의 合作投資가 더욱 所望스럽게 여겨지는 바이다.

年度別 外國人投資現況
〔表 4〕 單位：1,000弗

年度別	事業件數	投資金額
1962	1	1,370
1963	3	5,442
1964	5	728
1965	9	21,066
1966	11	2,618
1967	21	20,921
1968	41	29,738
1969	46	37,634
1970	113	82,294
1971	105	53,760
1972	152	104,187
合計	507	359,758

資料：經濟企劃院

※ 1972年度分은 11月末現在일

國別 外國人投資現況
〔表 5〕 單位：1,000弗

國家別	件數	投資金額
美國	123	179,847
日本	348	146,921
파나마	8	7,479
西獨	9	8,731
홍콩	5	2,775
네델란드	3	6,293
이탈리아	1	920
스위스	1	54
英國	1	60
카나다	1	29
其他	7	6,649
計	507	359,758

資料：經濟企劃院

가. 投資保障制度의 安全

앞에서 檢討된 바와 같이 最近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의 直接投資는 件數面이나 金額面에서 急激히 增加해 가고 있는데, 이는 다른 東南亞의 開發途上國과 比較해 볼 때 가장 큰 導入實績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68年의 境遇 主要 東南亞諸國의 外國人 直接投資實績을 살펴보면 泰國이 5千6百萬「달러」로 가장 많은 편이고 다음이 台灣인데 2千7百萬「달러」이며, 3位가 「인도네시아」로서 2百萬「달러」의 水準을 나타내고 있는데⁽²²⁾ 反해서 年度別 比較上의 差異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實績은 [表4]에서 본 바와 같이 1970年度에 8千萬「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72年度에는 11月末로서 1億「달러」를 突破함으로써 이들 亞細亞 여러나라의 實績을 훨씬 앞서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原因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分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客觀的인 投資環境이 다른 나라에 比해서 相對的으로 改善되었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努力에 依한 制度의 補完(그 實例로는 70年 1月에 制定된 “外國人投資企業의 勞動組合 및 勞動爭議에 關한 臨時特例法”의 施行을 指摘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오래동안 戰雲이 감돌던 韓半島에 7·4南北共同聲明以後 平和에의 期待를 可能하게 하는 한편 이웃나라인 日本은 지난 70年下半期부터 國際收支 赤字의 累増과 勞賃壓力에 짓눌려 一部 國內工場의 海外進出을 促하는 時期인데 最近에 台灣과의 國交가 斷切됨으로써 對韓進出이 더욱 活發하게 推進

註 22) U N, Balance of Payments Year Book, 1969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周邊情勢의 變化에 의한 影響도 크게 作用하고 있는 反面에 우리나라에 投資한 外國의 民間企業財産에 대해서는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는 措置도 더욱 큰 影響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投資保障制度의 內容을 要約하면, 첫째로 우리나라의 現行外資導入法 第14條에 의하면 外國人投資企業의 모든 財産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障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같이 外國人投資財産에 관한 法的 保障問題를 特別히 規定한 이 條文은 다른 나라에서의 外資導入에 관한 規定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當該 財産의 沒收 또는 強制收用 등에 따르는 具體的인 說明이 없이 이처럼 包括的인 說明만으로 規定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도 外國人投資企業의 財産을 法的으로 保障하여 沒收나 다른 方法에 의한 被害를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解釋되기 때문에 外國人投資家에게 있어서는 더욱 有利한 內容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0年 2월에 美國과, 그리고 1964年 2월에는 西獨과 各各 投資保障에 관한 協定을 締結함으로써 國際協定上으로 投資財産에 대한 保護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 1965년에 作成한 I B R D의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 우리나라도 署名 함으로써 이 協定에 署名한 다른 나라와 投資分爭이 發生하게 될 경우 그 解決을 爲한 國際的인 調整과 仲裁에 따를 것을 公約한 바 있다.⁽²³⁾

둘째로는 投資金の 回收와 配當金 등에 對한 送金の 保障을 들 수 있다. 現行 外資導入法 第11條 2項의 規定에 의하면 外國投資家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으로 인하여 생기는 正當한 利益의 配當金の 對外送金은 保障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同法 第12條 3項의 規定에 의하면 外國投資家は 그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の 賣却代金は 當該 企業이 營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2年後 每 1년에 出資額의 100分の 20까지 對外送金이 保障된다. 다만 當該 企業의 請算으로 인한 分配金の 對外送金에 있어서 經濟企劃院長官이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明示되어 있는데, 이 規定에 의하면 外國投資家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으로 생기는 正當한 利潤의 配當金은 無制限의 海外送金を 保障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 外國投資家は 自己가 所有하는 株式과 持分을 國內人이나 外國人에게 自由로 賣却될 뿐만 아니라 賣却의 時期와 그 範圍에 아무런 制限이 없으며 營業開始後 7年間이면 投資元金 全額을 (賣却金額이 額面價格을 超過하지 않을 때) 回收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當該 企業의 請算時에는 許可를 받아 一時 全額送金도 保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配當利益金の 再投資에 대한 保障措置이다. 現行 外資導入法 第6條 1項에 의하면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이 大韓民國의 法人企業體 또는 個人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을 引受하고자 할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라고 規定되어 있으며, 또한 同法

註 23) 趙淳, 直接投資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經濟研究「센터」, 1972, pp. 48~49

第7條 1項 다음 各號의 事項으로서 ① 外國人投資家は 原出資額까지 同一 또는 他外國人投資企業에 出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出資額 또는 그 合計額이 原出資額을 超過할 境遇에는 前條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外國投資家가 外國人投資企業이 아닌 他企業에 出資하고자 할 때에는 前條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라고 規定되어 있어서 利益配當金에 의한 再投資의 對象은 當該企業이나 또는 他外國人投資企業 및 國內 어느 企業에도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投資企業에 대한 財産保障과 投資企業의 經營活動에 따른 果實에 대한 送金 및 經營活動을 통한 事業展望이 좋을 때의 再投資에 대한 保障等 制度的인 面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企業活動을 爲한 優待措置

政府는 外國民間企業의 直接投資를 적극 誘致하기 위한 政策의 일환으로서 國內企業에 比해 여러가지 特惠의 優待措置를 취해주고 있는 實情이며 그 代表的인 것만을 檢討해 보면 租稅減免措置, 貿易去來上의 特惠措置, 勞使關係上의 特惠措置等を 措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內容을 간략하게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租稅減免措置는 國內企業에 比해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의 營業活動에 주어지는 租稅政策面에서 優待措置라고 할 수 있다. 現行 外資導入法 第15條의 規定을 보면 1項에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財産稅 및 取得稅의 課稅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따라 減免되며 그 減免은 당해 企業의 모든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한 外國人投資家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の 比率에 따른다. ① 所得稅, 法人稅, 財産稅는 당해 稅法에 의한 最初課稅起算日로부터, 取得稅는 登錄된 날로부터 5年間 賦課하지 않는다. ② 前號의 期間滿了日로부터 3年間은 당해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稅額의 100分の50을 輕減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項에는 第6條의 認可를 받은 外國人投資家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引受한 株式 또는 持分에서 생기는 利益의 配當金 및 剩餘金의 分配金에 대한 課稅는 다음 各號에 따라 減免한다. ① 당해 企業이 營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5年間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 前號의 期間滿了日로부터 3年間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의 100分の50을 輕減한다. ③ 第6條의 認可에 의하여 導入된 資本財에 대한 關稅 및 物品稅는 賦課하지 아니한다 라고 明示되어 있는데 이는 國內企業에 대한 租稅制度에 比해 지나친 特惠라고 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効率的인 經營을 遂行하면 非課稅와 租稅減免期間에 原出資額 全額을 回收할 수 있다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認可當時의 당해 企業이 導入되는 資本財는 全額 無制限의 減免措置가 되는 것이며, 또한 1970年 1월에 新設된 所得稅法 第6條3項의 規定에 의하면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の 給與에 대한 所得稅도 免除되겠끔 되어 있어 稅制上의 特惠措置는 실로 廣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貿易去來上의 特惠措置인데 政府는 1970年 10月에 外國人投資企業의 貿易去來 活動을 支援함은 물론 특히 外國人直接投資를 輸出産業에 誘致하기 위한 政策的인 配慮로 새로운 規定을 新設하였다. 즉 一般的으로 輸出에 의한 外貨의 入金實績이 30萬「달러」에 達한 때에 한하여 輸入할 資格을 부여했으며, 또한 6個月間의 輸出實績이 15萬「달러」에 未達할 境遇에는 輸出入業者로서의 資格을 取消하게 되어 있으나 貿易去來法 施行令 第3條 2項과 第4條 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境遇에는 이러한 制限을 받지 않겠음 되어 있다.

셋째, 勞使關係上의 特惠措置는 지난 1970年 1月에 우리 政府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勞動組合 및 勞動爭議의 調整에 關한 臨時特例法”을 公布하여, 施行함으로써 外國人投資企業體의 勞使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一般 國內企業에 適用되는 勞動關係法令(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勞動委員會法)의 適用을 排除토록 하였다. 이 法의 主要內容을 要約해 보면 첫째로 勞組設立時 地方長官에게가 아니라 勞動廳長에게 申告토록 했으며, 둘째로 勞動爭議發生時 地方勞動委員會가 아니라 勞動廳長에게 直接 申告토록 하고, 셋째로 申告를 받을 때는 20日以內에 同 紛爭의 調整을 完了토록 規定함으로써 政府는 外國人投資企業體의 從業員 賃金問題에 直接 介入하여 同種 國內企業의 賃金水準과 引上率을 參照하여 調整하도록 함은 물론 이 外企勞組에 대한 上位 또는 他勞組의 干涉을 排除토록 하므로써 投資家에게 勞使問題로 因한 念慮는 安해도 되도록 制度的으로 彌補됨 되고 있다.

3. 制度上的 問題點과 政策方向의 改善方案

가. 現行制度上的 問題點

韓國政府가 外國民間資本의 國內投資를 最初로 許容한 것은 1962年 8月에 韓國「나이론」社와 美國의 Chemtex Inc. 社 間에 「필라멘트 나일론」糸工場 建設을 爲한 投資比率 50% 對 50% (相互137萬「달러」投資)의 合作投資에 대한 承認이다. 그 이듬 해인 1963년에는 大韓石油公社와 美國 Gulf Oil 會社와의 精油工場 建設을 위한 合作投資等 初期에는 合作投資의 形態가 支配적이었으나 最近에는 單獨投資도 許容하고 있는 實情이며, 또한 앞서 檢討한 바와 같이 요즘에는 外國 民間人의 直接投資를 積極 誘致하기 爲해 制度的인 保障은 勿論 여러가지 優待措置를 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政策의 原因을 分析해 보면 1962年度 2·4分期에 들어서면서 부터 漸次 惡化되기 始作한 우리나라 對外支拂準備事情이 1963년에 이르러서는 急激히 惡化됨을 契機로 商業借款導入은 制限하는 方向으로 轉換하게 되었고 反面에 外國 民間企業이 直接投資에 의한 外資의 量的導入을 目標로 舊外資導入關係法令의 一元化 및 未備點을 補完하기

爲하여 지난 1966년에 單一外資導入法을 制定 公布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開發途上國家의 경우와는 달리 外國人直接投資에 關한 獨立된 法律은 制定되지 않고 借款이나 技術導入等과 함께 묶여있는 實情인데 이 現行 制度上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몇가지 問題點에 對해 分析 檢 討해 보고져 하는 바이다.

[表 6] 各國別 外國人直接投資에 따른 部門別 規定內容

1. 業種選定에 관한 規定

國 家 別	獎勸 또는 制限	對 象 業 種
실 론	獎勸業種 順位表示	農業開發事業, 國產原料資材利用產業, 輸出產業, 輸入代替產業, 綿 및 化學纖維, 建設資材事業, 輕工業
台 灣	許容基準表示	國內에 必要한 生産事業, 輸出產業, 主要續工業과 交通事業發展에 寄與하는 產業
印 度	1956 : 禁止產業明示	鐵道, 原子力, 武器, 軍需品, 銀行, 保險, 貿易, 石炭, 鐵鋼, 航空機, 造船, 電信, 電話, 肥料, 石油
	1961 : 獎勸業種表示	鐵鋼(鑄造物, 파이프) 非鐵金屬 및 合金, 各種構架物(보일러施設等 4種) 各種機械(베어링등 6種) 合成樹脂, 化學工業(肥料등 7種) 産業用가스, 新聞用紙 및 펄프等 總 25業種
인도네시아	禁止產業明示	港灣, 發電, 配電, 水道, 通信, 運輸, 船舶, 航空, 鐵道, 原子力, 매스메디어部門의 單獨投資
日 本	制限措置 없음	國內經濟에 惡影響없으면 許容
파키스탄	禁止產業明示	兵器, 原子力, 鐵道, 航空, 通信
필 립 핀	獎勸業種 順位表示	A 그룹 : 製鐵, 製鋼, 農業機械, 化學肥料等 44業種 B 그룹 : 船舶, 乘用車, 農業機械組立等 20業種 C 그룹 : 石油, 金屬製品, 纖維等 100業種
아르헨티나	禁止, 制限, 獎勸產業表示	禁止 : 鐵道 通信等 公益事業 制限 : 銀行, 保險, 라디오, T.V 獎勸 : 綜合製鐵 및 製鋼, 石油化學, 製紙, 鑛業, 農·畜産業
브 라 질	禁止業種明示	鑛業, 新聞, 라디오, T.V, 原子力
칠 레	制限業種明示	保險業, 土石採掘業, 漁撈沿岸輸送, 國內航空業 鐵鋼產業
멕시코	禁止業種明示	鐵道, 라디오, T.V, 公益事業, 石油 및 天然가스, 石油化學, 原子力, 金融業(金融機關 保險金社, 證券會社, 投資會社)

페 루	禁止業種明示	政府專賣事業 (담배, 소금, 코카)
그 리 이스	〃	鐵道, 電力, 通信
이 탈 리 아	制限業種明示	金融, 造船, 放送
포 루 투 칼	禁止業種明示	水道, 電氣가스, 鐵道, 煙草, 石油, 航空, 國防産業
오 스트 레 일 리 아	明文規定없이 制限	電信, 電話 버스 및 電力産業
가 나	禁止業種表示	鐵道, 發電 및 送電, 原子力武器 및 彈藥, 水道 및 給水

2. 出資比率에 관한 規定

國 家 別	外國人 投資의 持株比率 制限
台 灣	49%以下를 試圖하고 있으나 100%도 許容
인도네시아	다음産業의 경우 政府統制 (價格 및 質) 를 受諾해야만 100%許容 港灣, 發電, 配電, 水道, 通信, 運輸, 船舶, 航空, 鐵道, 原子力, 放送
말레이시아	49% 以下
필 립 핀	優待措置 받으려면 40%以下
브 라 질	漁業會社 40%以下 航空會社, 66.6%以下 海運會社 50%以下
카 나 다	銀行, 保險, 信託은 議決權株式數의 25%以下
칠 레	鐵鋼産業 35%以下
멕 시 코	鑛業 製鍊, 映畫, 運送, 漁業, 飲料品製造業, 出版業, 고무製造業 49%以下
페 루	海運會社 25%以下, 石油會社 70%以下
이 탈 리 아	航空業 33%以下, 借入 및 社債發行: 單獨投資의 경우 投資額의 50%以內
포 루 투 칼	40%以下
이 라	優待措置 받으려면 工業部門 40%以下 商事會社 50%以下
요 르 단	工業用알콜製造, 알콜飲料製造, 마취藥製造等に 반드시 政府가 參與
통 일 아 략	49%以下
日 本	新株發行의 경우 第一類: 自由化産業 (라디오 T.V 등 16個業種) 50%以下 第二類: 自由化産業 (造船業 등 44個業種) 100% 許容 非自由化産業: 7%以下

3. 元金 및 投資收益의 送金에 關한 規定

國家別	制限基準	制限內容
台灣	元金回收時期, 送金通貨	投資計劃完成 2年後부터 投資時의 使用通貨 (但 달러는 除外)
인도네시아	元金回收時期	租稅免除을 받고있는 期間中 不許
파키스탄	投資收入의 送金	15~20%의 配當稅 賦課
아르헨티나	元金回收時期	許可條件에 明示 (보통 投資計劃完成 3年後)
브라질	元金回收規模, 投資收益의 送金	年間 投資額의 20%以內, 投資額의 12%超過時 40~60% 所得稅附加
그리스	元金 및 投資收益送金規模	該當業體가 受取하는 外貨總額의 70%範圍以內
이락	投資收益의 送金規模	製造業은 投資額의 20%以內, 其他는 10%範圍以內
이스라엘	元金回收 規模	年間 投資額의 10%以內
요르단	元金回收時期 規模	生産開始 2年後부터 3年間 均等分割
이탈리아	元金回收時期 및 通貨 投資收益送金規模	投資時 2年經過, 投資時의 使用通貨, 年間投資額의 8%以內
韓國	元金回收時期 및 規模	營業開始 2年經過後 年間投資額의 20%以內

4. 雇傭에 關한 規定

國家別	規 定
브라질	總雇傭者數 및 賃金支拂總額의 2/3以上이 內國人일 것
칠레	總雇傭者數 및 賃金支拂總額의 85% 以上이 內國人일 것
페루	總雇傭者 및 賃金支拂總額의 80% 以上이 內國人일 것
실론	內國人 訓練 援用條件으로 外國人 技術者 雇傭可能
印度	上 同
필리핀	總雇傭者數의 5%以內, 期間은 5年以內에서 監督 및 諮問, 技術部門에서 外國人 雇傭可能, 每年 內國人 訓練에 關한 報告書提出
파키스탄	俸給水準別로 外國人 雇傭 可能範圍設定
가나	認可時 內國人 訓練計劃書提出 實施義務化

5. 國產化計劃에 關한 規定

國家別	規 定
台灣	電氣機器製造業의 경우 初年度의 40%에서 70%以上에 達할 때 까지 年次別로 10%式 提高토록
印度	國產化를 爲한 計劃書提出, 年次別國產化 比率은 case by case로
아르헨티나	自動車, 트랙터의 경우 5年內 完全國產化토록 하고 이에 相當하는 輸入은 制限

資料: 韓國外換銀行, "主要國의 外換導入制度, 에 依據作成

이 現行制度上의 問題點을 檢討하는데 있어서는 開發段階가 비슷한 諸外國이 自國產業 保護를 爲한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에 대하여 加해지고 있는 制限措置와 比較해 보아야 할 것이다.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國別 外國人 直接投資에 따른 部門別 規定內容을 살펴 보면 첫째로 禁止產業의 明示나 制限業種의 明示 또는 獎勵業種에 대한 順位가 規定되어 있는데 反해 우리라는 外國人投資業種의 制限이나 選定에 關한 別途의 規定이 없는 것이다. 外資導入法 第4條의 認可基準은 그 1항에 經濟企劃院長官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 또는 承認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으며 그 認可 또는 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國際收支의 改善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을 優先하여야 한다. ① 國際收支의 改善에 顯저히 寄與하는 事業 ② 重要産業 또는 公益事業의 發展에 寄與하는 事業 ③ 經濟開發計劃에 策定되어 있는 事業이라고 規定되어 있어 그 選定基準이 曖昧한 것이다.

둘째로 大部分의 나라가 外國人 投資에 있어서 出資比率을 規定하고 있는데 反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外國人 出資比率에 關한 規定이 전혀 없으므로 主務長官의 認可만 한다면 100% 單獨의 投資도 可能하게 되어 있다.

셋째로 元金 및 果實送金에 대해서는 別로 큰 差異가 없지마는 雇傭에 關한 規定이 全然 되어있지 않으므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에는 甚 不合理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로 國產化 計劃에 대해서도 전혀 規制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外國의 40%에서 年次別 10%씩의 提高나, 期限附를 두고있는 規定과 比較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要求해야 할 措置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끝으로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를 相對的으로 格下시키는 勞動爭議에 關한 特例法은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나. 政策方向의 改善方案

現段階의 우리나라 經濟事情으로 보아 外國人 直接投資를 積極 誘致해야 하는 것이 不可避하고, 다른 나라에 比해 制度面에서 優待를 하며 또한 投資環境이 改善됨으로 해서 앞으로 外國人의 直接投資는 漸增해 갈 것이 豫想되고 있다.

그런데 國內産業에서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커지면 커질수록 國內經濟에 미치는 影響도 그에 比例하여 커질것이 豫想됨으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의 影響力을 規制하고 그 企業活動이 國民經濟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方案을 미리부터 講求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外國人 直接投資의 誘致에 따른 政策方向의 改善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案하는 것이다

1) 業種選定에 關한 基準設定

앞에서 檢討해 본 바와 같이 外國企業家가 直接投資를 함에 있어서 投資對象業種을 規

定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解釋如河에 따라시는 것이 모든 產業이 投資對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禁止產業의 明示나 獎勵產業의 順位를 設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첫째로 國內 聯關產業에 波及效果를 가져와 國民經濟의 開發을 促進시킬 수 있는 產業, 둘째로 生産品 全量을 輸出할 業種, 셋째로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產業, 넷째로 輸出戰略上 外國企業의 商標를 빌려야 할 產業, 다섯째 輸入代替와 國產化施策이 所望스러운 事業等を 獎勵하고 國防上 또는 社會政策上 우려가 있는 產業은 禁止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先進國의 脫工業政策上 海外進出을 試圖하는 業種은 公害誘發과 그 對策을 充分히 分析하고 檢討된 後에 選定해야 할 것이다.

2) 出資比率에 關한 基準設定

外國人の 直接投資는 앞으로 合作投資를 하도록 함은 勿論 出資比率을 49%以下로 하도록 해야 한다. 國家政策上 49%線 以上 或은 100%의 出資比率에 의한 投資를 認可한다 손 치더라도 果實送金額이 元金の 150%를 上廻하는 一定期間이 經過하면 49%線以上의 持分은 政府나 內國人에게 賣渡하도록 規制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規制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理由는 企業의 支配權을 行使하여 尙차 國民經濟에 미칠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影響力을 事前에 억제 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3) 雇傭의 基準設定과 勞動爭議에 關한 特例法の 改正

現行 外資導入法에는 雇傭에 대한 規制가 全然 없으나 값싼 勞動者가 많은 우리나라의 與件으로는 問題視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國民所得水準이 높아감에 따라 勞賃水準도 높아질 것이므로 「브라질」이나 「칠레」 및 「페루」처럼 總雇傭者數 및 賃金支拂總額의 어느 水準以上을 (外國에서는 66~85%以上) 內國人으로 하도록 하는 規定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外國人投資企業體에 종사하는 勞動者의 勞動基本權을 制限하는 勞動爭議에 關한 特例法은 再檢討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國內企業의 境遇에 비해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勞動者는 昇進의 機會나 日常業務上의 感情面 및 言語의 장애등으로 不利한 점이 많아 오히려 賃金水準面에서는 相對的으로 높아지는 것이 當然한 것이다. 그리고 國內 同種業體의 賃金水準에 머므르게 한다는 것은 理解가 가나 여기에서도 果實送金の 出資額의 150%以上에 達할때 까지 라는 等 期限附의인 規定이어야 할 것이다.

4) 持惠措置에 關한 選別基準의 設定

現在 우리나라의 外國人 投資企業에 對해서는 一律의인 優待措置를 하고 있는데 政策方

向의 改善方案에 따른 業種選定の 基準에 따라 優待措置에 差等を 두어야 하며, 外國에서 처럼 株式所有의 持分比率이 40%以下라야 優待措置를 해주는 制度를 우리나라의 現實情으로는 받아들여기가 困難하다면 國際收支改善에 有効하게 寄與할 수 있는 業種을 優先하도록 하는 現行法의 入法精神에 따라 그 企業의 生産品中 몇%가 輸出되었나를 調査해서 生産量에 대한 輸出比率을 감안하여 優待措置에 等差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勞動爭議에 關한 特例法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企業의 범위를 同法 施行令 第2條에 規定된 投資金額 10萬「달러」以上을 100萬「달러」以上으로 하고, 當該企業에서 生産하는 製品을 全量輸出하는 企業으로 하되 그 金額이 年間 100萬「달러」以上이고 製品 全量을 輸出하는 企業에 한해 適用토록 하는 差別的 優待措置를 해 주어야 한다.

5) 國內企業의 經營合理化와 産業整備의 段階的 實現

外國民間資本이 우리나라에 대한 直接投資가 增加하고 開發需要에 따른 資本不足을 「카버」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滿足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特히 多國籍企業같은 巨大한 外國의 民間企業은 資本, 技術, 經營而이 모두 優勢하므로 國內進出이 많으면 많을수록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클것은 當然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에 對備해서 國內企業은 經營合理化를 先行하여 企業의 體質부터 改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企業을 公開하고 專門經營者를 초빙하여 所有와 經營을 分離하며 또한 企業合併等を 통해 競爭力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合併은 規模의 經濟性을 追求할 수 있으며 또한 生産原價를 節減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合併만이 所望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合併및 系列化의 促求는 施設代替를 통한 新工程의 實現과 技術導入을 통해 生産性的의 提高와 經濟性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競爭力을 強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競爭力의 強化는 産業整備의 段階的 實現을 可能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開發의 60年代에 있어서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은 國內市場을 相對로 한 輸入代替의 工業化에 큰 比重을 찾아했으나 70年代의 産業政策은 輸出産業의 劃期的인 育成에 힘써야 하며, 그 競爭力도 國際市場에서 差質이 없도록 해야 함으로 非效率的이고 國際時勢에 比해 너무도 비싼 高價의 輸入代替産業은 段階別로 整理를 斷行하여 韓國의 企業도 80年代初에는 後進國에 進出하여서 그나라의 市場確保를 爲해 現地生産基地를 確保하는 것이 有利할 수 있는 能力을 갖도록 하는 計劃이나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以上으로 多國籍企業의 生態와 이들 企業이 韓國進出에 따른 우리나라의 政策方向 改善方案에 對해 檢討해 보았다.

오늘날 企業의 國際化와 이에따른 多國籍企業의 出現은 世界經濟에 있어서 하나의 뚜렷한 趨勢로 나타나고 있음을 認識할 수 있는데 이들 多國籍企業은 海外生産活動, 輸出 및 Licensing 等 廣範한 活動領域을 包含하고 있으며, 이는 國境을 超越하여 商品과 技術人的資源 및 資本의 調達과 交換을 自己完了的으로 그리고 가장 經濟的으로 遂行하는 이른바 自社組織內의 最適國際分業體制를 確立하는 同時에 企業組織의 能力과 資本의 힘으로 世界의 生産과 marketing을 더욱더 統合시키고 있어 世界經濟內에서의 多國籍企業의 役割과 그 意義는 한층 增大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外資導入政策上 이 多國籍企業과 불가분의 關係를 맺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60年代의 우리나라 外資導入은 借款主導型이었고 借款企業體中 여러 企業體가 不實企業體로 전락하여 經營能力의 貧弱性을 들어내었으며 또한 開發途上國 이면서도 後進國과 같은 非能率의 標本임을 立證하고 만 셈인데 이에따라 元利金償還을 相對的으로 加增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借款은 그 種類가 公共「베이스」던 商業「베이스」던 간에 求得하기가 힘든 實情인데다가 우리나라는 開發投資에 外資需要가 繼續增加되고 있어 外國民間人的 直接投資를 必要로 하고있다.

한편 이와같은 與件에 따라 政府는 그동안 投資環境의 改善에 힘써 온 結果 우리나라와 類似한 開發途上國家의 政策의 規制內容과 比較해 볼 때 너무도 優待措置가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現行外資導入法上에는 長期的인 眼目으로 보아 몇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改善方案을 段階的으로 講求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檢討된 바와같이 外國人의 直接投資는 借款의 境過와 달리 元利金을 一定期間內에 償還하지 않은 것이므로 國際收支上에 壓迫을 덜 받아서 좋고 高度의 生産 및 經營技術을 國內企業에 傳授하는 效果를 가져 오며 外國에 대한 製品輸出이나 原料購入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綿密하게 生覺해 보면 이와같은 期待는 現實과 乖離되기 쉽고 또한 國民經濟가 外國依存性의 深化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對策講求는 賢明한 일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外國民間人的 直接投資에 대해 經驗이 日淺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斷定的으로 評價할 수는 없으며 더 많은 經驗이 蓄積되어야 비로소 그 原因을 認識하게 될 것이지만 確實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外國人投資企業 특히 多國籍企業을 받아들리는 受入國은 그나라 政府와 多國籍企業間에 相關關係를 形成하므로 이에 對處하는 受入國政府의 能動的인 力量에 따라 自國의 經濟發展에 寄與度를 提高시킬 수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外國資本의 導入이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否認못할 事實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必要로 하는 것이 資本인데 이 資本誘致를 위한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外國의 작은 會社보다 巨大한 資本과 技術 및 經營能力을 가진 多國籍企業이 所望스러울

것임을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最近 多國籍企業은 私的인 政府라고 불리울 만큼 巨大한 힘을 世界의 政治 經濟에 미치게 하고 있으며, 多國籍企業은 取扱여하에 따라서 世界情勢에 지극히 重大한 影響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이 한자리에 모인 強力한 國際機構를 設立하여 多國籍企業의 準據, 投資, 行動等 모든 分野에 걸친 協定을 만들어 多國籍企業과 主權國家는 各기 이를 準守해야 할 것이다. 前美國務次官인 「조지·볼」氏에 의하면 美國의 多國籍企業은 超國籍世界企業化되어 受入國인 現地國의 國家利益과 多國籍企業 利益追求間의 調和點을 찾아내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現地國側에서도 過激한 民族感情이나 一時的인 충동에 의해 多國籍企業의 資產몰수라는 輕舉를 하지 않도록 “國際投資憲章의” 制定을 力說한 點을 우리는 多角的인 側面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